

광주지방법원 2017. 1. 17 선고 2016가단3418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A주택조합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6. 12. 20.

판결 선고 2017. 1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잡종지 67㎡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드, ㄹ, 그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 부분 정비공장 41.4㎡, 같은 도면 표시 ㄱ, ㅂ, 스, ㅇ, 그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2 부분 폐기물 저장소 3.0㎡, 같은 도면 표시 ㄷ, ㄷ, 키, 트, ㄷ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3 부분 화장실 2.0㎡, 같은 도면 표시 고, ㅎ, ㄱ-1, ㄴ-1, 그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4 부분 주택 41.4㎡, 같은 도면 표시 -1, ㄹ-1, ㄱ-1, ㅂ-1, 디-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5 부분 화장실 3.0㎡, 같은 도면 표시 6부분 철재계단(가로 1m, 세로 5.7m)을 각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광주광역시는 광주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일환으로 광주 북구 D 일대에 진입도로 및 공공용지 조성사업을 진행하였고, 사업시행자로 원고를 선정하였다.

나. 원고는 위 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이를 고시한 후[광주 북구 고시 E(2014. 12. 15.), F(제16. 4. 15.)] 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 액수에 대한 견해차이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사업시행자로서 광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였다.

다. 광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. 8. 5. 원고 소유의 광주 북구 C 잡종지 67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수용하고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26,017,650원으로정하는 재결을 하였다. 피고는 위 재결서를 2016. 8. 11. 송달받았다.

라.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2016. 9. 6. 이 사건토지에 대하여 2016. 9. 4.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마. 피고는 원고의 위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2016. 8. 29.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.

바.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ㄴ, ㄹ, 그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① 부분에는 정비공장 41.4㎡가, 같은 도면 표시 ㄴ, ㅂ, 스, ㅇ, □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② 부분에는 폐기물 저장소 3.0㎡가, 같은 도면 표시 ㅈ, ㅊ, 키, 트, ㅈ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③ 부분에는 화장실 2.0㎡가, 같은 도면 표시 고, ㅎ, ㄱ-1, ㄴ-1, 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④ 부분에는 주택 41.4㎡가, 같은 도면 표시 -1, ㄹ-1, ㄴ-1, ㅂ-1, 드-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⑤ 부분에는 화장실 3.0㎡가, 같은 도면표시 ⑥ 부분에는 철재계단(가로 1m, 세로 5.7m)이 있는바, 피고는 위 시설들을 통해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.

【인정근거】갑 제1 내지 4호증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자신의 시설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드, ㄹ, 그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① 부분 정비공장 41.4㎡, 같은 도면 표시 ㄱ, ㄴ, 스, ㅇ, □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② 부분 폐기물 저장소 3.0㎡, 같은 도면 표시 ㄱ, ㄷ, 키, E, 즈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③ 부분 화장실 2.0㎡, 같은 도면 표시 고, ㅎ, 7-1, L-1, 호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④ 부분 주택 41.4㎡, 같은 도면 표시 -1, ㄹ-1, □-1, ㅂ-1, 디-1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⑤ 부분 화장실 3.0㎡, 같은 도면 표시 ⑥ 부분 철재계단(가로1m, 세로 5.7m)을 각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의 주장 및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미 토지수용절차가 완결되어 손실보상금 공탁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쳐진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
판사 한윤옥

별지 5-2

